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5
년
1
1
월
5
일
(
수
)

·
주
간
제
4
5
호

·
통
권
제
1
7
5
2

·
납
세
자
가

자
주
문
은

양
도
소
득
세

사
례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1/ 5 통권 175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안내**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이사의 충실의무: 벤처기업 실무대응 방안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양도세 서면질의 사례
- AI 3대 강국 도약, 국제청이 뒷받침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안내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품질테스트를 위한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p.11)

<거주자 각종소득 원천징수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근로 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6%~45%) 8단계 누진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일당 15만원 공제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사업 소득	임의실적성과보수	3% (봉사료 5%)	외국인직업운동가 20%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금융거래의 이자소득	14%	일반율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온라인 금융업자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최고세율
	금융실명법 비실명소득 (차등과세)	90%	위법행위
	금융투자의 배당소득	14%	일반율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최고세율
	금융실명법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위법행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사적연금	기본세율 3~5%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연금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	2억원까지는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 시금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간이세액표)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52호 / 주간 45호

2025. 11. 5.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주자 각종소득 원천징수세율	표지
CEO의 경영산책	이사의 충실의무: 벤처기업 실무 대응 방안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4
	- 투자채권 문의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 조항 비교	8
	- 대·중소기업간 공제율 차등 6개국 제도 비교	9
직장인 Survival	협업 효율을 높이는 6가지 습관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446, 2025.03.31)	11
	-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전법규소득-291, 2025.05.15)	12
세정 뉴스와 해설	상호관세 15%·현금투자 年상한 200억불... 한미관세협상 합의	13
마케팅 Tax consulting	품질테스트를 위한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2
세무정보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양도세 서면질의 사례	14
	-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25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안내	29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8

이사의 충실의무: 벤처기업 실무대응 방안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배경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 의무를 명문화했다. 다양한 주주가 혼재한 비상장 벤처기업에서도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했는지가 엄격히 요구되어 의사결정 거버넌스 및 법적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벤처기업은 투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창업자-투자자(VC·PEF 등) 간에 지분구조, 경영권 방어, 신주발행,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보상 등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은 의사결정 문서화·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커지고, 이해상충 관리와 주주 간 공평 대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다.

● 벤처기업에 적용 여부

비상장 벤처기업도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상 개정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 무등)의 적용 대상이며, 투자 라운드가 누적되며 다변화된 주주 구조에서는 상법 382조3(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창업자, 투자자 지명 이사 등 모든 등기이사가 대상이며, 특정 주주 이익 편향 의사결정시 위법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상법 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의 실무 대응방안

벤처 스타트업 기업경영상의 실무 대응 방안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사회 운영: 모든 안건에서 “총주주 이익”과 “공평 대우에 관한 판단 기준 자료를 의사록에 명확히 남긴다. 특수관계· 이해상충 시 사전 고지, 의결 제한,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 투자 구조 계약: 라운드별 조건(밸류에이션, 청산우선권, 보호조항)이 보통주·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분석(Water fall) /회석 시뮬레이션)을 표준화 한다. 투자자 지명 이사의 역할·의무·이해충돌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드 옵저버와(Board Observer) 의 역할 분리를 검토한다.
- 이사회 프로세스 정비: 이해상충 식별, 대리인, 특별위원회 활용, 주주 전체 관점의 공평 대우 기준을 안건별로 명시화 한다. 의사결정의 사실 관계, 대안 검토, 공정성 근거(시장조건, 외부평가, 등)등에 대한 문서화를 강화한다.
- 주주 커뮤니케이션 체계화: 라운드 전후로 정보 제공 원칙·타임라인·질의응답 채널을 표준화하여 분쟁 가능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투자·M&A 절차 재설계: 투자 등 추진 일정에 ‘공평 대우’ 검토 구간을 기획단계에 반영하여 핵심 조건의 합리성(예: 회석, 청산우선권, 전환조건 등) 검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 규정·정관·주주간계약 업데이트: 공평 대우· 총주주 이익 고려 절차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보권, 동의권 설계를 재점검한다.
- 분쟁· 법적 리스크 관리: 배임 리스크 쟁점화를 고려해 법률의견서·외부자문 트랙을 상시화하고, 안건별 리스크 메모를 표준화 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사결정 지연, 책임 증대, 소송 등에 대비한 임원책임보험(D&O) 가입, 외부 자문 및 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인프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Q 수출신고 및 부가세신고 수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업체로 제품수출을 하고 미국업체로부터 대금을 회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과거판매된 수출건에 대해 단가정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1월 ~ 2025년5월까지의 판매내역에 대한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하고, 6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반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각 월별로 단가정산 Credit note을 발행하고, 과거의 홈택스 부가세신고 및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할 경우, 과거의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신고내역은 정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A 1.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 영세율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관세청 수출신고내역 부분은 국세 내용이 아니므로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문의의 건

Q 컨테이너 취득 또는 임차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및 납부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1. 컨테이너 1~2동을 취득(임차) 시 컨테이너 안에 에어컨 및 부속설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Q2. 컨테이너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이후에 추가 부속설비를 컨테이너에 부착하여 설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는지?

(이미 컨테이너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추가 설치한 부분이므로 취득세 추가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지)

Q3. 취득세 신고시기에 대해 1년 이상의 사용이 예상되더라도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최초 축조신고 시 사용기한을 1년미만으로 신고한 후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는지?

A 1. 가설건축물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에어컨 등의 부속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2. 부속설비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설비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예상되면 취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1년 초과시점에 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채권 문의

Q 당사는 '기타금융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NPL 채권을 매입하여, 대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해당 채권을 관리합니다.
해당 채권에서 발행되는 수익이 있을 경우 영업외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까요?
채권을 관리한 대부회사가 원천세를 공제 후 이자를 입금해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np채권과 관련된 수익이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귀사가 귀사의 정관을 토대로 해당 사업이 정관상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인식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원천징수의무자를 판단할 수 없는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Q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어,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없는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A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자본적 지출)과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수익적 지출)로 구분된다.

취득후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느냐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자산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지출의 구분방법과 회계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해당 지출로 인해 생산능력의 증대,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기비용 처리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자산 가액의 5%에 미달하거나 건당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해당 수선비를 손금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 조항 비교

구분	일반 벤처투자(세액공제 ○)	A사 사건(세액공제 ×)
투자방식	현금 → 신주 인수	토지 매각 → 매매대금 채권 → 주식 전환
자금흐름	신규자금 유입	기존 채권의 전환
세법상 '출자'	인정	불인정
세액공제	투자금의 5%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 제13조: 자금 납입 외에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출자 방식 인정

- 제13조의2: 증자대금의 납입만을 출자로 한정(채무전환 명시 없음)

→ 1심 판단 "제13조엔 '채무의 자본 전환'이 명시돼 있지만, 제13조의2에는 빠졌음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 거래(채무전환)는 세법상 출자 아냐"



증여세 과세표준(증여공제 후)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대·중소기업간 세액공제율 차등 6개국 제도 비교

국가		공제율 차이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한국	R&D 비용	2% * 신성장 20-30%, 국가전략 30-40%	25% * 신성장 30-40%, 국가 전략 40-50%	23%p * 신성장, 국가전략 10%p
	R&D 설비투자	1% * 신성장 3%, 국가전략 15%	10% * 신성장 12%, 국가전략 25%	9% or 10%p
일본		(최저) 1% (최고) 14%	(최저) 12% (최고) 17%	(최저) 11%p (최고) 3%p
독일		25%	35%	10%p
캐나다		15%	35% or 15% * 3백만 CAD 초과시 15%	20% or 0%p
호주		8.5% or 16.5% * R&D 비용이 전체비용 2% 초과시 16.5%	18.5%	2 or 10%p
아이슬란드		25%	35%	10%p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 양도차익 5억원, 보유기간 8년 가정, 납부세액은 지방세 포함

구분	증과 유예(현재)	2주택 증과	3주택 증과
과세 표준	3억9532만원	4억7110만원	4억7110만원
세율	40% (기본세율)	최대 60% (기본세율+20%p)	최대 70% (기본세율+30%p)
납부세액	1억4540만원	2억8239만원	3억3421만원



협업 효율을 높이는 6가지 습관

● 정보를 ‘공유 가능한 형태’로 남기십시오

업무 기록은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메모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핵심 요약, 파일 경로, 담당자 등을 명확히 표기하면 협업 속도가 달라집니다.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회의, 채팅, 이메일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단순 확인이라면 메시지, 논의가 필요하다면 회의, 공식 기록은 이메일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이야기하는가’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소통이 줄어듭니다.

● 공용 자료는 ‘하나의 최신 버전’을 유지하십시오

프로젝트 파일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으면 혼선이 생깁니다. 클라우드나 협업툴을 활용해 항상 최신 버전을 한곳에서 관리하십시오. 버전 관리가 잘 되는 팀은 수정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기한’과 ‘응답’입니다. 작은 일정이라도 약속을 지키면 팀 전체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미리 공유하는 것 또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전달하십시오

“이건 별로예요”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처럼 표현해 보세요. 피드백은 상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성과는 함께 나누고, 공로는 먼저 인정하십시오

작은 성과라도 팀원과 함께 공유하고, 공로는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협업의 리더입니다. 칭찬과 인정이 쌓이면, 팀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협력 분위기로 변합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품질테스트를 위한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부가-4446, 2025.03.31

질 의

- 사업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의뢰받아 그 타이어에 맞는 테스트용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 해당 승용차는 타이어 품질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사용

질의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 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1281, 2025.03.31

질 의

- '03.4월 A주택 취득(거주자)
- '21.7월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21.7.~'23.7.)
- '23.7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23.7.~'25.7.)
- 임대인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
- A주택 양도* 예정(12억 초과, 거주이력 없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후 양도하는 것으로 전제

질의

-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전법규소득-291, 2025.05.15

■ 질 의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한 이후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등록일, 결성총회일, 등록 신청일, 투자계약체결일, 입금일 중 어느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회 신

개인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일 전에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사전법규소득-325, 2025.05.30

■ 질 의

- 질의인은 상담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소지한 내담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음
 -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은 1회당 x만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소지한 내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상이함

질의

- 상기와 같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상호관세 15%·현금투자 상한 200억불... 한미관세협상 합의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여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만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가동... 중요 자료 제보시 포상금 최대 40억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

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

국세청 실시간 자금조달계획서 공유... 고가아파트 전방위 출처조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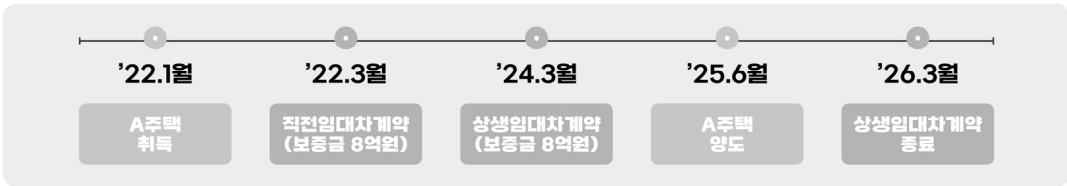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자주 묻는 양도세 서면질의 사례

- 국세청, 2025. 10

01.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A주택을 취득한 위대한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거주요건*을 면제 받고자 '22.3월 임차인과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 필요
- 이후 '24.3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게 된 위대한씨는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함
- 국세청은 위대한씨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사례 설명

-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년6개월 이상의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2년 이상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위대한씨의 경우와 같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면서 양도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 관련 법령에서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후에 주택을 양도해야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령§155의3)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 (개요) 소득령 §155의3①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는 제도
 - (요건) 임대하는 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직전계약)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 체결
 - ② (상생계약) ‘21.12.20.~’26.12.31.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
 - ③ (임대기간)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
 - ④ (증액요건)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지 않음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 가능
 -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 ③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관련 해석

- 사전-2024-법규재산-0610, 2024.09.23. (제목) 상 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0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 여부



● 박하나씨는 A거주주택과 B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B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음

- 이후, 박하나씨는 B임대주택을 4년 6개월 정도 임대한 후 양도함
- 국세청은 박하나씨가 A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에 B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A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사례 설명

-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박하나씨의 경우와 같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은 거주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됩니다.

☑ 체크포인트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령§155②①②)

● 거주주택 비과세

- (개요) 일정기간(8년·10년) 임대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

- (요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대주택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임대등록) 양도일 현재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소득법§168)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특법§5)하여 임대할 것
 - ② (증액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등 5% 증액 제한 충족할 것
 - ③ (주택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④ (임대기간)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할 것

구분 \ 임대등록	'20.7.10. 이전	'20.7.11.~ '20.8.17.	'20.8.18. 이후
의무임대기간	5년	8년	10년

- 거주주택 요건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횡수 제한 폐지 : '25.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여러 차례 적용 가능
- (혜택)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먼저 적용 가능)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 (사후관리)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관련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2018.05.08.
(제목) 임대기간요건 미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03.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와 관련하여 신축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1세대1주택자인 신미래씨는 A주택을 보유하던 중 B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함

- 신미래씨는 B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대상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함
- 국세청은 B신축주택에 신미래씨의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A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함

◎ 사례 설명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1종 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2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신미래씨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았으나 신축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이사·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소득령§156의3③)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요건(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2022.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③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④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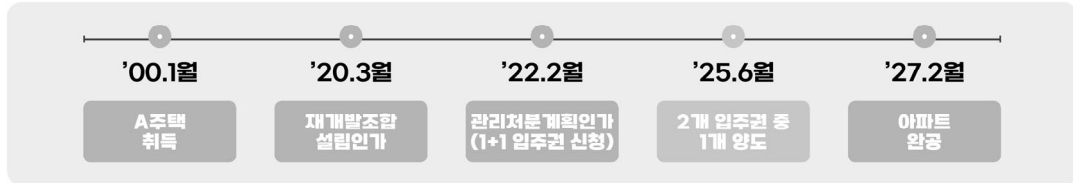
관련 법령(소득령156의3②)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요건(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 ②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③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관련 해석

- 서면-2024-부동산-0921, 2024.04.02.
 - (제목)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회신)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 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4.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1세대1주택자인 이민국씨는 오랜 기간 거주하였던 A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하나의 입주권을 양도함
 - 이민국 씨는 재개발 이전 20년이 넘도록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2개의 입주권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1개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이민국씨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함

◎ 사례 설명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 이민국씨의 경우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 하는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됩니다.

☑ 체크포인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1세대1주택자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06.1.1. 이후부터는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동법 제89조제2항 및 부칙 제7837호, '05.12.31. 제12조)

관련 법령(소득법 §88(6), 소득법 §89② 및 부칙 제7837호, '05.12.31. 제12조)

- 조합원입주권의 개념 및 범위(소득법 §88(6))
 -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

-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①재건축사업 또는 ②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③자율주택정비사업, ④가로주택정비사업, ⑤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⑥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으로서 취득한 것(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 포함)으로 한정, 이에 딸린 토지 포함

●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여부(소득법 §89② 및 부칙 제7837호, '05.12.31. 제12 조)

- (원칙)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예외) 단, 재개발사업 등의 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대체주택 비과세 등 소득령 §156의2 각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가능

관련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1176, 2023.07.14.

(제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신)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 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05.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합가하여 각각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 2주택을 보유한 이로운(男)씨와 2주택을 보유한 한아름(女)씨가 혼인한 후 양도차익이 적은 C주택과 D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 중 A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함
- 이로운씨와 한아름씨 부부는 양도 당시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합가 특



례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은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자경감면○) → 추징 107백만원 (자경감면X)

◎ 사례 설명

- 소득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소득령\$155⑤).
- ⇒ 이로운, 한아름씨 부부의 경우 각각 2주택을 보유하는 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혼인합가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체크포인트

혼인 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후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 당시에는 부부가 각각 1주택씩만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혼인합가 특례(소득령 \$155⑤)

- (개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① 혼인합가 당시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①의 주택 중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것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

(제목)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질의) 각각 2주택 이상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하여 합가로 1세대가 소유하게 된 주택수가 4주택 이상인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안) 적용할 수 있음
 - 2안) 적용할 수 없음
-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06.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 최우리씨는 '17.2월 A주택을 취득하여 '17.3월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21.3월 자진말소함
- 1세대1주택자인 최우리씨는 '25.3월 A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최우리씨가 A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을 배제하고 표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사례 설명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우리씨의 경우 A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보유특별 공제 표2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체크포인트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여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주택을 '17.8.2. 이전에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증부법 §8④2, 증부령§4의2① 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법§95①)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

* 미등기양도자산과 중과세율 적용 자산 제외

-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

- 표 1.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건물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표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공제율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공제율 (최고 30%) 적용

관련 해석

- 사전-2022-법규재산-0908, 2023.01.13.

(제목) 1세대1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 국세청, 2025. 10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24일(금)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 5천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10월 27일(월)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①세무검증 최소화, ②연구개발(R&D) 등 지원, ③유동성 지원, ④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합니다.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순환조사 대상은 제외)

-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합니다.

*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②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

③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 ④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유형	세정지원 내용
세무검증 최소화	✓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R&D 등 지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전용상담창구 운영

- 아울러,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 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 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AI 대전환」을 향해 열공 중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 올리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그의 일환으로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빙하여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며, 여러분들의 AI 인사이트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강의에 집중해서 임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자는 “AI가 단순히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성까지 도출할 수 있음을 느꼈으며, 우리청에서도 친(親)납세자 세정 구현을 위해 AI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실무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AI 통찰력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세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AI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등 AI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역량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성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세청은 AI를 활용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3단계 AI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 전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전 조직이 ‘열공 모드’로 AI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지난 9월에는 본청 직원을, 11월은 전국 7개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까지를 대상으로 AI의 작동 원리와 다양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AI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관리자를 주 대상으로 한 AI전략특강을 통해, 국세행정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등 AI에 대한 정책 대응역량을 한층 높였습니다.
- 또한, 11월에는 AI 대전환을 선도할 전문관 양성을 위해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AI를 제대로 이해하여 정책결정과 행정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국세청은 올해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AI교육을 실시하고, AI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력 1백 명을 AI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 또한,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AI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4일 (금)	10월 27일 (월)	10월 28일 (화)	10월 29일 (수)	10월 30일 (목)
미 달 러 (USD)	1436.60	1436.10	1432.50	1434.30	1433.00
일 본 엔 (JPY)	941.23	937.77	937.75	942.84	938.38
영 국 파 운 드 (GBP)	1914.41	1913.10	1910.88	1903.46	1890.63
캐 나 다 달 러 (CAD)	1027.06	1026.45	1024.31	1028.47	1027.61
홍 콩 달 러 (HKD)	184.85	184.84	184.41	184.62	184.41
위 안 화 (CNH)	201.30	201.38	201.33	202.22	201.97
유 로 화 (EUR)	1668.83	1669.83	1668.93	1671.03	1662.71
호 주 달 러 (AUD)	935.73	938.56	939.29	943.91	941.41
싱 가 폴 달 러 (SGD)	1106.31	1106.18	1105.07	1108.42	1104.6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39.58	340.07	340.26	341.70	342.1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안내

- 국세청, 2025. 10

I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요

도입 배경

-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자금유입 증대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국가 대부분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제도 내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 「국채법」제5조제1항 근거,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근거

- ①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②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적격외국금융회사등”)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모두 비과세

* 소득세법§119의3 및 법인세법§93의3 (’22.12.31. 공포)

※ 「국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종류

- ① 국고채권(국채법) ② 재정증권(국고금관리법) ③ 국민주택채권(주택법)
- ④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국환거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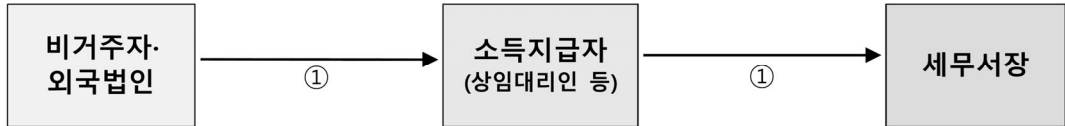
적용 시기

- ’23.1.1.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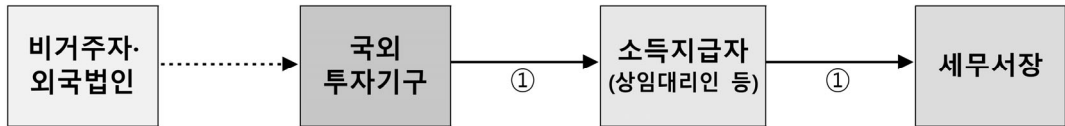
II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 절차

1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

i) 직접 투자하는 경우



ii)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① 비과세 신청서(비거주자·외국법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6서식. 거주자증명서(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및 소득지급자용 거래·보유명세서 제출의무는 폐지('25.2.28.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공·사모 모두 포함)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고 이자·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법인세법§93의3③·소득세법§119의3③, '25.1.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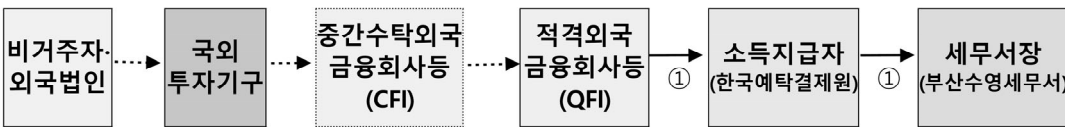
2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 상세 내용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QFI)의 승인대상 범위 및 운영 안내('25.3. 국세청·한국예탁결제원 공동 배포) 참조

i) 직접 투자하는 경우



ii)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① 비과세 신청서(QFI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2), 비거주자·외국법

인(공·사모 국외투자기구 포함)은 QFI에 비과세 신청서 제출 불필요(법인세법 시행령 §132의4①2·소득세법 시행령§179의4①2, '25.2.28.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III 국채 등 비과세 관련 FAQ

1 비과세 제도 관련

1 외국인인 누구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No.

- ▶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1의2)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No.

- ▶ 소득세법§156① 및 법인세법§98①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국채 등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국채 등의 종류로는 「국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①국고채권, ②재정증권, ③국민주택채권, ④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⑤통화안정증권이 있습니다.

4 비거주자·외국법인(이하 '투자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 국채 등 매수 시점과 상관없이, '23.1.1. 이후 국채 등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투자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공·사모 구분 없이 국외 투자기구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Yes.

- ▶ '25.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는 공·사모 구분 없이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는 더 이상 자신의 투자자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법인세법§93의3③ 및 소득세법§119의3③

6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공·사모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No.

- ▶ '25.1.1.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공·사모 포함)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소득세법 §119의3⑤ 및 법인세법 §93의3⑤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7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개시일 전 기간 경과분 이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비과세 적용기간('23.1.1.~)에 투자자에게 이자가 지급된 경우, 적용기간 개시일 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예) '22.10.5.부터 '23.1.5.까지 발생한 이자를 '23.1.6. 지급한 경우, '2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23.1.6. 지급한 이자 전액(3개월분)에 대하여 비과세

8

투자자의 국채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 ▶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비과세 신청서 관련

1 투자자(이하 국외투자기구 포함)가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거주 증명서(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6서식

Yes.

- ▶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5.2.28. 이후 비과세 신청 분부터는 투자자가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더 이상 거주자 증명서(또는 대체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179의4①1 및 법인세법 시행령§132의4①1

2 투자자가 이미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따 라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투자자가 소득지급자를 통해 이미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과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투자자가 당초 신청한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투자자가 당초 제출한 국채 등 비과세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지체 없이 신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No.

- ▶ 국채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어느 한 투자자가 여러 금융기관(소득지급자)과 거래할 경우, 각 소득지급자에게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No.

- ▶ 투자자가 어느 한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에 이미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초의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179의4① 및 법인세법 시행령§132의4①

- ▶ 다만 해당 투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는 소득지급자인 각 금융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과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자에게 비과세 신청서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지급자인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제출한 비과세 신청서 사본을 통해 해당 투자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Yes.

- ▶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에 제출된 비과세 신청서 사본 등을 통해 해당 투자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당부 사항> 투자자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동의하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비과세 신청서 사본 등을 받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비거주자·외국법인용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서식이 구분되어 있는데, 잘못된 서식을 제출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Yes.

- ▶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용 비과세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의6서식)를 작성하거나,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용 비과세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13서식(1))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119의3

④ 및 법인세법§93의3④에 따라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8 거주지국 개념이 별도 적용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서식의 소득자(투자자)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 소득세법§119의3③ 및 법인세법§93의3③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자신이 설립된 국가(외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볼 수 없어 거주지국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서식의 소득자(투자자)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에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투자자가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지급자는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요?

Yes.

- ▶ 투자자가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119의3④ 및 법인세법§93의3④에 따라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투자자가 소득세법 시행령§179의4① 및 법인세법 시행령§132의4①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투자자가 당초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지급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이후 투자자가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Yes.

- ▶ '25.1.1.부터는 소득세법§119의3⑥,⑦ 및 법인세법§93의3⑥,⑦에 따라 투자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51⑤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국채 등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시, 해당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투자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세법§119의3⑥,⑦ 및 법인세법§93의3⑥,⑦에 따라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에 해당 소득의 ①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해당 투자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②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③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비과세 적용을 위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2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 현재 관련 법령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투자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경정청구에 한하여 공신력 있는 등록 당국이 발급한 비거주자·외국법인 증빙서류*를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거주자증명서를 대체하여 첨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붙임1]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참고(p.10)

13

투자자가 상임대리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해당 상임대리인이 투자자를 대리하여 국채 등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Yes.

- ▶ 소득세법 시행령§179의4⑤ 및 법인세법 시행령§132의4⑤에 따라 상임 대리인이 투자자를 대리하여 국채 등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4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제출 시 소득지급자의 서명만 있어도 되나요?

No.

- ▶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제출 시 소득자(투자자) 및 소득지급자의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③ 기타

1

소득지급자는 더 이상 거래·보유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Yes.

- ▶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소득지급자는 더 이상 거래·보유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35349호)§179의4①1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35350호)§132의4①1

- ▶ 다만, 국세기본법§85의3에 따라 납세자는 관련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비치·보존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은 법인세법§122 및 소득세법§170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No.

- ▶ 소득세법 시행령§216의2①1 및 법인세법 시행령§162의2①1에 의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3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를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나요?

Yes.

- ▶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비과세 신청

4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영문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Yes.

- ▶ 국채 등 비과세 신청서 영문 서식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경정청구 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구 분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① 개 인	· 여권 사본, 성명·주소 등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중 하나 * 한국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기록증명서 반드시 첨부
②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주소 등이 확인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법인명·거주지국·주소 등이 확인되는 유효한 법인 식별기호(LEI) 상세정보 등) 중 하나
③ 정부기관·연기금	· 정부기관·연기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상호·거주지국·주소 등이 확인되는 유효한 법인 식별기호(LEI) 상세정보 등) 중 하나
④ 국외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 발급 서류, 외국인 투자등록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상호·거주지국·주소 등이 확인되는 유효한 법인 식별기호(LEI) 상세정보 등) 중 하나

붙임 2.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생략

법인세법 <법률 제20613호, 2024.12.31.>

●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

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법인이 해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24.12.31>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해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내국법인이 해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부 칙 <법률 제20613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2.28.>

●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



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2조의3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보유·양도하는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의 상호, 거주지국(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 및 소재지 등(이하 이 조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비치할 것.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의 상호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 <2025.2.28>
3. 삭제 <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제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삭제 <2025.2.28>

③ 삭제 <2025.2.28>

④ 외국법인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 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국채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⑥ 법 제98조제7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삭제 <2025.2.28>
2. 외국법인의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①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제64조 및「소득세법」제17조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개정 2025. 3. 21.>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 성명					
	② 주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국적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뒤쪽)

소득지급자	㉓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㉔ 대표자(성명)			
	㉕ 납세자번호		㉖ 전화번호	
	㉗ 주소 또는 소재지			
대리인	㉘ 대리인유형	㉙ 성명 또는 법인명	㉚ 납세자번호	
	[] 납세관리인 [] 그 밖의 대리인			
	㉛ 주소 또는 소재지			
	㉜ 납세지 관할 세무서		㉝ 전화번호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㉙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 "㉛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 "㉚ 납세자번호"란, "㉕ 납세자번호"란 및 "㉝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㉘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㉗ 거주지국"란 및 "㉜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㉓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 "㉔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㉗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㉘ 대리인유형"란부터 "㉝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2)] <개정 2025. 3. 21.>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납세자번호		④ 승인받은 날	
	⑤ 주 소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인)

세무서장 귀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뒤쪽)

소득지급자	㉓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㉔ 대표자(성명)			
	㉕ 납세자번호		㉖ 전화번호	
	㉗ 주소 또는 소재지			
대리인	㉘ 대리인유형	㉙ 성명 또는 법인명	㉚ 납세자번호	
	[] 납세관리인 [] 그 밖의 대리인			
	㉛ 주소 또는 소재지			
	㉜ 납세지 관할 세무서		㉝ 전화번호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㉓ 법인명(상호)"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㉕ 납세자번호"란 · "㉖ 납세자번호"란 · "㉗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㉛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 "㉜ 거주지국"란 및 "㉝ 거주지국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㉙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 "㉚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㉛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㉘ 대리인유형"란부터 "㉝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6서식] <개정 2025. 3. 21.>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 법인명			
	② 납세자번호			
	③ 주소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법인세법」 제93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뒤쪽)

소득지급자	㉓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㉔ 대표자(성명)			
	㉕ 납세자번호		㉖ 전화번호	
	㉗ 주소 또는 소재지			
대리인	㉘ 대리인유형	㉙ 성명 또는 법인명		㉚ 납세자번호
	[] 납세관리인 [] 그 밖의 대리인			
	㉗ 주소 또는 소재지			
	㉛ 납세지 관할 세무서		㉜ 전화번호	

년 월 일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㉓ 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㉔ 납세자번호란, ㉕ 납세자번호란 및 ㉖ 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되,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㉗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 ㉘ 거주지국란 및 ㉙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에 따른 국가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㉚ 법인명(상호)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 ㉛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㉜ 주소 또는 소재지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㉝ 대리인유형란부터 ⑯ 전화번호란까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